

[별지 제1호서식의(가)] 명부의 표지

년 월 일 실시 국민투표

(투표인) · (거소투표신고인) · (선상투표신고인) 명부

작성 :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

확정 : 년 월 일

○○시 · 도 ○○구 · 시 · 군

○○읍 · 면 · 동 제○투표구분(○책중 ○권)

○○구 · 시 · 군의 장 ㉠

- 주: 1.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또는 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"○○읍 · 면 · 동 제
○투표구분(○책중○권)"을 "○○읍 · 면 · 동분(○책중○권)"으로 한다.
2. 동시실시의 경우 "국민투표"는 "○○선거 및 국민투표"로, "투표인명부"는 "선거인명부"
로 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의(나)] 투표인명부

등재번호 ①	주 소 ②	세대주 ③	성 별 ④	생년월일 ⑤	성 명 ⑥	투표용지수령인⑦		비 고 ⑧
						(가)	(나)	

주: 1. 명부기재방법

- ① 등재번호란에는 투표구 단위로 그 구역 안의 주소의 건물번호순 또는 통·리·반 또는 투표인의 성명의 가·나·다 순이나 생년월일순에 따라 일련번호를 기재한다.
- ②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적는다.
- ③ 세대주란에는 세대주일 경우 "세"로 표시한다.
- ⑥ 성명란은 투표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.
- ⑦ 투표용지수령인란중 "(가)"란은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본인이 서명하거나 날인 또는 무인하며, "(나)"란은 투표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등을 실시할 때에 한하여 서명하거나 날인 또는 무인한다.
- ⑧ 비고란의 기재와 투표인명부의 수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.
 - 가. 구·시·군의 장은 이의·불복신청 또는 명부등재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하고 구·시·군의 장 자신의 도장을 찍는다.
 - 나. 거소·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른 사람은 비고란에 "거소투표자" 또는 "선상투표자"로,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른 사람은 "국외부재자"로 표시한다.
 - 다. 구·시·군의 장은 투표인명부 확정 전에 투표권이 없는 사람·사망자·이중등재자·재외투표인명부등재자·다른 구·시·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등재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두 줄로 삭제하고, 오기의 발견시는 그 오기된 글자만 두 줄로 삭제하되, 각각 비고란에 그 사유(투표권이 없는 사람·사망자·이중등재자·재외투표인명부등재자·다른 구·시·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등재자·오기)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구·시·군의 장 자신의 도장을 찍는다.
 - 라. 관할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인명부 확정 후에 투표권이 없는 사람·사망자·이중등재자·재외투표인명부등재자·다른 구·시·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등재자·오기된 사람을 구·시·군의 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, 선상귀국투표신고·재외귀국투표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통합투표인명부의 비고란에 기재한다.
 - 마. 읍·면·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에 투표권이 없는 사람·사망자·이중등재자·재외투표인명부등재자·다른 구·시·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등재자·오기된 사람을 구·시·군의 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, 관할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상귀국투표신고자·재외귀국투표신고자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비고란에 기재한다. 다만, 읍·면·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인명부를 투표관리관에 송부한 후에는 투표관리관이 그 사실을 비고란에 기재한다. 이하 "바."에서 같다.
 - 바. 읍·면·동선거관리위원회는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거소투표용지 미발송자와 반송자의 해당 비고란에 "미발송", "반송"이라 기재한다.

사. 동시실시의 경우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은 비고란에 "비례대표 선거권자"로,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선거권 없이 국민투표의 투표권만 있는 사람은 "국민투표권자"로,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은 비고란에 "○○ 선거권자"로, 외국인선거권자는 비고란에 "외국인(지방선거권자)"으로 적는다.

2. 투표인명부 작성시 윗란과 동일사항이 계속될 때에는 "상동" 또는 "〃" 표시로서 생략할 수 있다. 단, 쪽을 달리할 경우는 생략할 수 없다.
3. 투표인명부가 작성되면 대철하여 투표인명부의 표지와 끝 쪽의 대철부분에 구·시·군의 장의 직인을 날인한다.
4. 동시실시의 경우 "투표인명부"를 "선거인명부"로 하고, 국민투표와 선거를 구분하지 않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, 외국인선거권자 순으로 빈 줄 등을 두어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되,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먼저 적고, 그 다음에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을 적는다. 다만, 동시선거에서 일부의 선거에 대해서만 선거권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를 차례대로 선거인명부의 맨 끝에 적는다.

[별지 제1호서식의(다)] (거소투표신고인명부) · (선상투표신고인명부)

연번	투표인명부 등재번호	성명	주소	비고
	(거소투표) · (선상투표) 접수일시	생년월일, 성별	거소(우편번호)	

- 주: 1. "주소"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적는다.
 2. "거소"란에는 거소투표신고서의 거소란에 적혀 있는 내용을, 선상투표신고서는 선박의 명칭란 및 팩스 번호란에 적혀 있는 내용을 적는다.
 3.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구·시·군의 장으로부터 투표권이 없는 사람, 사망한 사람, 잘못 적힌 사람에 대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"비고"란에 적는다.
 4. 명부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,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 순서는 투표인명부 등재번호 순에 따른다.
 5. 그 밖에 거소·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방법은 투표인명부 작성방법에 준한다.
 6. 동시실시의 경우 "투표인명부"는 "선거인명부"로 하고, 국민투표와 선거를 구분하지 않고 작성하되,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은 비고란에 "비례대표 선거권자"로,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선거권 없이 국민투표의 투표권만 있는 사람은 "국민투표권자"로,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은 비고란에 "○○ 선거권자"로 적는다.

[별지 제1호서식의(라)] (명부의 끝부분 기재사항)

(1) 이 투표인명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작성하고 ○책으로
(분철) 작성하였음.

○○구·시·군의 장 인

(2) 이 투표인명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○○장소와 ○○
(구)·(시)·(군)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게 하였음.

○○구·시·군의 장 인

(3) 이 투표인명부는 년 월 일 확정되었음.

○○구·시·군의 장 인

- 주: 1. 거소·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(1)항 및 (3)항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.
2. (3)항은 명부의 이의·불복신청에 대한 결정과 변경사항의 수정에 따라 추가로 명부에
올린 후 명부의 확정시 끝부분에 기재한다.
3. 동시실시의 경우 "투표인명부"는 "선거인명부"로 한다.